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문화유산¹⁾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²⁾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 2 신설).

II. 검토의견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 반영 필요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또는 장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³⁾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함.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⁴⁾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1호)⁵⁾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실체적 내용의 개정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5) 별표에 제219호 및 제2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2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제63조를 개정⁶⁾하고 있는데, 해당 제63조⁷⁾는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현행법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 제6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는데 이는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해당함.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은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경우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이 아닌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통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소관 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⁹⁾, 「국유재산특례

6)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 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908

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912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1호)의 심사를 통해 각 법률에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지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은 정)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각 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